

1. 개정이유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노인복지법」 제5조의2가 개정(2023. 8. 16. 개정, 2025. 8. 17. 시행)됨에 따라,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,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,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(제1조의3제1항,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)

나.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와 같이 영향평가 결과,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(제1조의3제2항,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)

다.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

록 함(제1조의3제3항,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3을 제1조의4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조의3) 제2항 중 “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의2”를 “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1조의2”로 하며,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3(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노인정책영향평가(이하 “영향평가”라 한다)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,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,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.

③ 영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노인정책영향평가 요청서

행정기관명

수신 보건복지부장관

(경유)

제목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 요청

노인복지법 제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합니다.

정책 개요	정책명		
	정책분류	중앙	☐ 계획 ☐ 사업 ☐ 법령 ☐ 행정규칙 ☐ 기타
		지자체	☐ 계획 ☐ 사업 ☐ 법령 ☐ 조례·규칙 ☐ 행정규칙 ☐ 기타
	정책 목적		
	정책 내용		
	도입 시기		
	정책 대상 (노인 포함 여부)		
요청 사유	정책의 기대효과		
	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	[] 상당 [] 보통 [] 미미	
	노인정책영향평가의 시급성	[] 상당 [] 보통 [] 미미	
	노인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	[] 상당 [] 보통 [] 미미	
	작성자 및 책임자 (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)	○ (작성자) ○ (책임자)	

붙임 정책설명자료 1부. 끝.

중앙행정기관장
지방자치단체장 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통보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(경유)

제목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통보

노인복지법 제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보합니다.

정책 개요	정책명		
	정책 분류	중앙	☐ 계획 ☐ 사업 ☐ 법령 ☐ 행정규칙 ☐ 기타
		지자체	☐ 계획 ☐ 사업 ☐ 법령 ☐ 조례·규칙 ☐ 행정규칙 ☐ 기타
	정책 내용		
	정책 대상 (노인 포함 여부)		

평가 개요 및 결과	평가 기간	0000.00.00 ~ 0000.00.00(00일간)	
	평가기관 (담당자)	○ (평가기관 담당자) 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 ○ (유관부서 담당자) 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	
	평가 대상 선정 방식	[] 신청 [] 직권	
	평가 결과 종합		
	제언, 개선 권고 사항		

붙임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세부사항(0000정책) 1부. 끝.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통보

행정기관명

수신 보건복지부장관

(경유)

제목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이행 통보

노인복지법 제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정책 및 평가 개요	정책명		
	정책분류	중앙	☐ 계획 ☐ 사업 ☐ 법령 ☐ 행정규칙 ☐ 기타
		지자체	☐ 계획 ☐ 사업 ☐ 법령 ☐ 조례·규칙 ☐ 행정규칙 ☐ 기타
	정책내용		
	정책 대상 (노인 포함 여부)		
	평가 기간	0000.00.00 ~ 0000.00.00(00일간)	
	평가 대상 선정 방식	[] 신청 [] 직권	

평가 결과 및 이행 사항	평가 결과 및 제언, 개선 권고 사항(요약)		
	기 조치사항		
	향후 계획		
작성자 및 책임자 (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)		○ (작성자) ○ (책임자)	

붙임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상세 설명 자료 1부. 끝.

중앙행정기관장
지방자치단체장 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3(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노인정책영향평가(이하 “영향평가”라 한다)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,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,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.</u> <u>③ 영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</u>

<u>제1조의3(인권교육) ① (생략)</u> ② 「<u>노인복지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<u>령</u>”이라 한다)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<u>개선대책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제1조의4(인권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</u> ② 「<u>노인복지법 시행령</u>」 제11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